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28

발의연월일: 2022. 3. 23.

발 의 자:김용판·최형두·서일준

김예지 · 최춘식 · 박대수

이주화 • 박덕흠 • 유경준

김영식 · 김성원 · 정운천

추경호 · 조명희 · 김승수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,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,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 1일로 일몰될 예정임.

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자산 및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 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	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
감면)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	감면) ①
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	
업(이하 이 조에서 "사회복지	
사업"이라 한다)을 목적으로	
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	
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	
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사회	
복지법인등"이라 한다)가 해당	
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	
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	
해서는 취득세를 <u>2022년 12월</u>	<u>2024년 12월</u>
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다음	31일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	
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	2
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	
직접 사용(종교단체의 경우 해	
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	
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	

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부 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 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 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 -----2024년 12월 31일-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 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 세를,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 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 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종업 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 -----2024년 12월 31일-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.

- ④ (생략)
- ⑤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.

⑥ (생략)

•
④ (현행과 같음)
5
2024년 12월 31일
⑥ (현행과 같음)